

1. 개정이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4항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지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등급구분표 조정(별표 1)

○ 추가 지역 반영, 제외 지역 삭제, 등급 상승 및 하락지역 조정

나.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등급구분표 조정(별표 2)

○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개편('23년) 되고, 국방부 국립현충원 업무가 국가보훈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내용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총리령 제 호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
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등급 구분표(제2조제1항 관련)

1. 벽지(僻地) 지역

시·도별	시·군·구별	지역 및 등급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라 지역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항동		
	기장군				일광읍 용천리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보면 위성리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산151-1)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서생면 화정리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산12-1)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	
	연천군				전곡읍 마포리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양평군	단월면 산음리		옥천면 신북리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	
	원주시			지정면 판대리	판부면 서곡리
	강릉시			왕산면 송현리	성산면 어흘리
	태백시				소도동, 장성동, 철암동, 통동, 황지동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도계읍 도계리 도계읍 전두리 하장면 광동리
	홍천군		내면 광원리		내면 창촌리 서면 반곡리
	횡성군				강림면 강림리 둔내면 삽교리
	영월군				김삿갓면 옥동리 북면 마차리 산솔면 녹전리 상동읍 내덕리 영월읍 영흥리
	평창군		진부면 수항리		
	정선군		정선읍 회동리	여량면 구절리	고한읍 고한리 남면 문곡리 북평면 북평리 사북읍 사북리 신동읍 예미리·조동리 여량면 여량리 임계면 봉산리 정선읍 봉양리·신월리 화암면 화암리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사내면 명월리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기린면 방동리	북면 용대리	
	고성군		간성읍 장신리		토성면 학야리
	양양군		서면 서림리		

시·도별	시·군·구별	지역 및 등급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라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내수읍 덕암리
	보은군				장안면 장재리
	단양군		대강면 올산리		어상천면 임현리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장현리	오천면 원산도리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서천군				종천면 산천리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신시도리	
	진안군			정천면 갈용리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순창군			구림면 안정리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소록리 영남면 양사리
	화순군		사평면 유마리		
	장흥군	관산읍 농안리			
	해남군				회원면 화봉리
	장성군			북이면 죽청리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임회면 굴포리	임회면 남동리
	신안군				증도면 증동리 자은면 구영리 안좌면 읍동리 팔금면 읍리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 용유리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동로면 노은리
	영양군			수비면 신원리	
	영덕군			병곡면 영리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석포면 석포리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금강송면 쌍전리	금강송면 삼근리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도요리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함양군			마천면 삼정리	유림면 국제리 서상면 상남리
제주특별 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 도서(島嶼) 지역

시·도별	시·군·구별	지역 및 등급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라 지역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팔미도)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옹진군	덕적면 북리(선미도) 영흥면 외리(부도)		덕적면 진리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어청도리		
	부안군			위도면 치도리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덕촌리	남면 우학리·연도리 화정면 개도리	
	영광군		낙월면 상낙월리		
	완도군	소안면 당사리		노화읍 내리 보길면 부황리	금당면 차우리 노화읍 이포리 청산면 도청리 금일읍 화목리 생일면 유서리
	진도군		조도면 가사도리	조도면 창유리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흑산면 예리·홍도리· 가거도리	비금면 덕산리 하의면 웅곡리 신의면 상태동리	
경상북도	울릉군	서면 남서리 울릉읍 독도리	울릉읍 도동리·사동리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육지면 동항리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영흥리	우도면 서광리·연평리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3. 접적(接敵) 지역

시·도별	시·군·구별	지역 및 등급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라 지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대룡리 송해면 송뢰리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진촌리 대청면 대청리·소청리 연평면 연평리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 선적리	군내면 백연리 문산읍 사목리 장단면 노상리·도라산리 탄현면 성동리		적성면 구읍리
	연천군		군남면 삼거리 백학면 두일리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근남면 육단리 철원읍 읍이리	서면 와수리	김화읍 청양리 동송읍 오덕리
	양구군	해안면 현리	해안면 만대리		
	고성군		현내면 사천리		현내면 철통리

비고: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는 항로표지관리소는 라 지역으로 본다.

[별표 2]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 구분표 (제2조제2항 관련)

구 분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
부처별	기관별				
공 통		해발 800미터 이상의 높이에 위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법무부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재소자의 계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교정직공무원	재소자의 계호 업무를 지원하는 교정직공무원과 직접 교화, 분류 심사,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공무원	재소자의 교도(敎導) 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 (교정직공무원과 교화, 분류 심사,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소년원, 소년분류 심사원	수용 소년의 계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보호직공무원	수용 소년의 계호 업무를 지원하는 보호직공무원과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공무원	수용 소년의 보호 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 (보호직공무원과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국립 법무병원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사람의 수용·감호 및 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사람의 수용·감호 및 치료 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외국인 보호소		외국인 보호, 강제퇴거 집행 및 신원 특이사항 특별보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외국인 보호, 강제퇴거 집행 및 신원 특이사항 특별보호 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

구 분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
부처별	기관별				
보건복지부	국립정신 건강센터, 국립 정신병원			환자의 간호 및 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환자의 진료 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
	국립 소록도 병원	한센병환자의 진료·간호·검사 등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공무원	한센병환자의 치료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		
	국립 재활원			심신장애인의 의료·재활· 직업훈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심신장애인의 의료·재활· 직업훈련 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
	국립 망향의 동산 관리원			해외동포의 유해 안장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해외동포의 유해 안장 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
국가 보훈부	국립 묘지 관리소			유골 및 시신의 이관 및 안장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유골 및 시신의 이관 및 안장 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
질병관리청	국립 결핵 병원		결핵환자의 진료· 간호·검사 등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공무원	결핵환자의 치료 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	

비 고: 각 기관의 등급별 수당지급대상자의 범위는 법무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질병
관리청장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